의안 번호	55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

아이돌봄지원사업(마산권·진해권) 민간위탁
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아이돌봄지원사업(마산권·진해권) 민간위탁
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9.28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일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(의안번호 제55호)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함

나.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, 진해권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('24. 1. 1. ~ '26. 12. 31.)이 만료되어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아이돌봄지원사업(마산권・진해권) 운영 및 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추진근거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
-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5장(연계 및 지원기관)

○ 적정성 검토 결과

- 맞벌이,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으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
-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, 다양한 홍보 등 민간위탁 장점 활용 가능
- 민간기관 참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 전문성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가능

다.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: 아이돌봄지원사업(마산권・진해권) 운영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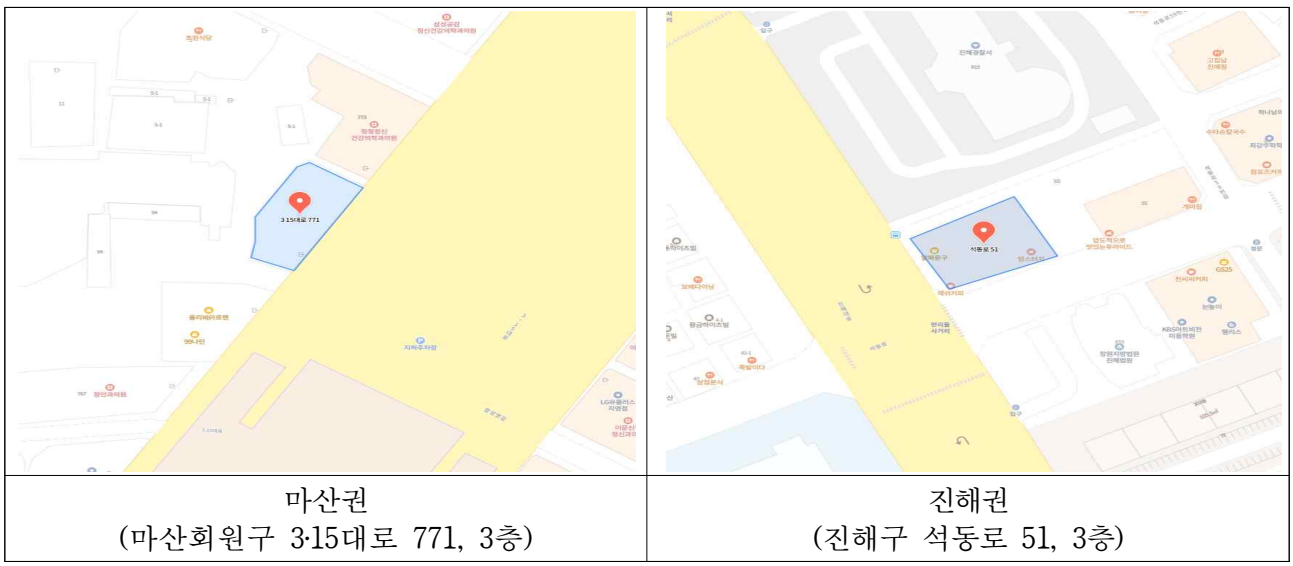
- 아이돌봄사 모집 및 채용 관리
- 서비스연계 및 안전관리
- 이용자 관리
-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
- 사업운영 관리
- 기타 지자체와 협의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라. 시설현황

○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현황

기관명	위치	규모	주요시설
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(마산권)	창원시 마산회원구 3·15대로 771, 3층	191.4㎡	사무실, 상담실 등
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(진해권)	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51, 3층	174.41㎡	사무실, 상담실 등

○ 위치도



마산권 (마산회원구 3·15대로 771, 3층)	진해권 (진해구 석동로 51, 3층)

마. 위 탁 기 간 : 3년(‘27. 1. 1. ~ ‘29. 12. 31.)

바. 위탁소요예산 : 10,003백만원 ※ ‘27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가능

(국비 7,002 70%, 도비 900 9%, 시비 2,101 21%)

사.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아.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·의결

자. 성과평가 결과

○ 평가개요

- 근　　거 :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(성과평가)
- 평가내용 :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평가항목	배점(100점)	평가내용
운영관리	40점	조직운영의 효율성, 재정관리의 적절성,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
사업성과	50점	주요 사업성과, 위탁시설 운영 실적 등
사후관리	10점	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, 자체평가 유무 등

○ 평가결과

- (마산권) 평가점수 : 93점

합계(100점)	운영관리(40점)	사업성과(50점)	사후관리(10점)
93점	35점	48점	10점

- (진해권) 평가점수 : 94점

합계(100점)	운영관리(40점)	사업성과(50점)	사후관리(10점)
94점	36점	48점	10점

○ 총평

- 인력운영, 재정관리, 이용자-아이돌봄사 간 서비스연계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음
- 마산권은 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의 다양한 이용자 민원과 아이돌봄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진해권은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

차. 향후 추진계획

○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‘26. 10.
○ 접수기관 현장확인 : ‘26. 11.
○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‘26. 11.
○ 선정결과 통보 : ‘26. 11.
○ 위·수탁 계약 체결 : ‘26. 12.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 및 진해권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마산권·진해권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재위탁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[1]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·운영할 필요가 있음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.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, 아동

1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(이하 “서비스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② **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**

보호 및 돌봄 상담, 서비스 연계 등 현장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[2]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[3]과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제1항[4]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'공개모집'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제1항[5]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마산권은 93점, 진해권은 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, 운영관리(조직운영·재정관리 등), 사업성과(주요사업 성과·위탁시설 운영실적 등), 사후관리(이용자 만족도·자체평가 등)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.

○ 매년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아동과 아이돌보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
2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13조(계약 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**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**로 한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**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**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4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(수탁기관 선정 방법) ① **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**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5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(성과평가) ① **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**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관리,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종사자와 이용 아동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됨.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, 위탁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·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또한「아이돌봄 지원법」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,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참고 **창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현황** (동의안 붙임자료 발췌)

(단위:백만원, 명 /'26.7월 기준)

위탁기관	관할구역	위탁기간	예산	아동	종사자	돌봄사
계			17,548	1,874	17	653
경남행복한교육사회적협동조합	마산권 (합포, 회원)	'24.01.01. ~ '26.12.31. (3년)	5,616	688	6	222
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	진해권	'24.01.01. ~ '26.12.31. (3년)	4,387	416	5	167
창원손길 사회적협동조합	창원권 (의창, 성산)	'26.01.01. ~ '28.12.31. (3년)	7,545	770	6	264